

UN 인권 메커니즘

- 정보인권 관련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김가연 변호사
(사) 오픈넷

UN 인권 메커니즘



※ 출처: 외교부 “국제인권관련기구” 페이지

UN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1. 설립 배경

- 인권을 안보 및 개발과 함께 국제사회의 3대 주요 과제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구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체하여 **2006.3.15 유엔 총회 결의(60/251)**로 설립
 - 유엔 인권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였던 반면, 인권이사회는 **총회 산하 보조기구(subsidiary organ)**로 격상

2. 주요 임무

-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보호를 위해, 인권이슈에 대한 논의 및 개선방안 모색,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유엔 시스템내 인권의 주류화와 효율적 조정 역할을 담당
 - 정기회의: 연중 최소한 3회/ 총 회의기간 최소한 10주 이상
 - 특별회의: 이사국 1/3 다수결로 개최

UN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3. 이사국 규모 및 선출방법

- 이사국수는 총 47개국(임기 3년)
- 유엔회원국 절대 과반수(96표) 이상 득표국 중 다수 득표순으로 선출
- 2016. 1. 현재 인권이사국 명단

지역	인권이사국
아시아 (13개국)	한국,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키르기즈, 몰디브, 몽골,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아프리카 (13개국)	알제리, 보츠와나, 부룬디, 콩고,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모로코, 남비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통고
중남미 (8개국)	볼리비아, 쿠바,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서구 (7개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영국
동구 (6개국)	알바니아, 조지아, 라트비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UN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4. 주요 제도

1)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 모든 유엔회원국들(193개국)의 인권 상황을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각종 인권협약 등 보편적 인권기준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
- 2008.4. 시작, 4-5년을 주기로 매년 3회(2, 5, 12월), 2주간 16개국씩 검토
 - 해당 회원국의 정부보고서 제출, 이해관계자들인 NGO, 국가인권기구 등의 보고서 제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정보 수집 및 제공, HRC의 보고서 채택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됨
- 한국은 2008.5, 2012. 10. 2차례 수검, 2017. 10. 제3차 검토 예정

2) 진정절차(Complaint Procedure)

- 특정국가에서 일어난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인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국가를 상대로 비공개적으로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UN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4. 주요 제도

3)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 독립적인 인권전문가(명예직)에게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해 연구
 - 조사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그 보고서를 기초로 인권이사회가 논의
- 국가 방문, 개별 사건 또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정부 등에 공식 서한 발송, 주제별 연구 및 전문가 회담 소집 등 활동을 하며, 매년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제출
 - **주제별 특별보고관**(독립전문가, 실무그룹도 포함) **42명**;
나라별 특별보고관(독립전문가 포함) 14명 (2016. 6. 기준)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1993년 도입, 2014. 8. 현재 특별보고관 David Kaye(미국) 임명
 -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2015년 도입, 2015. 7. Joseph Cannataci(말타) 임명

표현의 자유 특보 최근 활동



1. 주요 정보인권 보고서

- 2016년: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와 민간 영역(Report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ivate sector in the digital age)’
- 2015년: ‘암호화와 익명화의 사용(Report on the use of encryption and anonymity)’
- 2013년: ‘정부의 통신감시가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행사에 갖는 함의 (Report on the implications of States’ surveillance of communications on the exercise of the human rights to privacy and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2. 2010년 표현의 자유 특보 Frank La Rue 한국 방문

- 2011년 한국방문보고서
 - 명예훼손 형사처벌(특히 진실적시 명예훼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정보 심의, 허위통신 금지, 정보매개자의 임시조치 의무, 인터넷 실명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

프라이버시 특보 최근 활동



1. 임명 경위

- 2013. 12. UN 총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결의안 채택
- 2014. 6. UN 인권최고대표는 UN 총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보고서를 발표
- 이후 UN 총회는 프라이버시 SR을 도입할 것을 권고, 2015. 4. 인권이사회에서 3년 임기의 프라이버시 SR을 임명할 것을 결의
- 2015. 7. 현 프라이버시 SR Joseph Cannataci(말타) 임명됨

2. 주요 보고서

- 2016. 3. 첫 번째 보고서 발표
 - 프라이버시의 현 상황과 앞으로 3년간 업무 수행 계획 언급

※ 2018. 7. 2.부터 10일간 한국 방문 예정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1. 설립 배경 및 구성

- 1966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 1976.3.23 발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 당사국의 규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
- 개인 자격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임기 4년)

2. 주요 기능

-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자유권규약) 당사국 보고서 심사
 - 당사국은 보통 4년마다 보고서 제출
- 당사국에 대한 제안 및 권고
- 개인진정 접수 및 심사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3. 최근 동향

- 2015. 10. 대한민국 자유권 심의 진행, 2015. 11. 5. 권고 발표
 -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Monitoring, surveillance and interception of private communication)
 42.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을 이유로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43.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해 모든 감시가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정보인권 관련 주요 UN 문서

1. 2012. 7. UN HRC 결의안 20/8 ‘인터넷 상에서 인권의 증진, 보호와 향유(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이 온라인에서와 오프라인에서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천명한 UN 인권기구 최초의 결의안
2. 2013. 12. UN 총회 결의안 68/167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 스노든 폭로로 드러난 대량감시 문제에 대한 UN 총회 차원의 대응
 - 통신 감시와 감청이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
 - 회원국들에게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것과, 특히 통신감시와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절차와 법규를 국제인권규범에 맞춰 정비할 것을 요청

감사합니다.

8kkim8@gmail.com
kkim@opennet.or.kr